

2025학년도

키움·나눔으로 더불어 행복한

# 순창중앙 교육과정 설명회

## 학부모 연수 자료

2025년 3월 26일(수)

# 순창중앙초등학교



---

# 연수목차

---

1. 학교현황 및 학교교육계획	
2. 학교폭력 예방교육 .....	1
3. 도박 예방교육 .....	3
4. 아동학대 예방 .....	5
5. 가정폭력 예방 .....	6
6. 인권교육 .....	7
7. 생명존중 및 자살 예방 .....	9
8.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 .....	10
9. 공무수행사인이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 방지법 .....	14
10. 촌지수수 및 불법찬조금 모금 근절 대책 .....	15
11. 교육활동 보호교육 .....	16
12.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 .....	18
13. 나이스 학생·학부모 서비스 안내 .....	20
14. 정보통신윤리교육 및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	23
15. 교직원의 홈페이지 개인정보 제공 기준 안내 .....	24
16. 성폭력 예방 .....	26
17. 양성평등교육 .....	28
18. 흡연 예방교육 .....	29
19. 미세먼지 대응 행동 요령 .....	30
20. 장애인식 개선 .....	32

---

# I. 학교 현황

## 1. 학교연혁

• 1969. 4. 30.	순창중앙국민학교 설립인가
• 1970. 3. 19.	순창중앙국민학교 8학급 개교
• 2023. 9. 1.	제18대 박진현 교장선생님 부임
• 2024. 12. 31.	제52회 졸업식(47명 졸업, 총 4,729명 졸업)
• 2024. 3. 1.	초등학교 10학급 편성(특수 1학급) 병설유치원 1학급 편성

## 2. 학생 현황(2025.3.4.기준)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도움반	계	유치원	
학급	1	2	1	2	2	2	1	11	1	
학생 수	남	4	14	19	12	21	23	(4)	93	5
	여	10	6	22	13	19	19	(0)	89	4
	계	14	20	41	25	40	42	(4)	182	9

## 3. 교직원 현황

성별	직																			청 소 원	계		
	교 장	교 감	부 장 교 사	교 사	특 수 교 사	보 건 교 사	영 양 교 사	사 서 교 사	전 문 상 담 교 사	유 치 원 교 사	행 정 실 장	주 무 관	조 리 종 사 원	교 무 실 무 사	특 수 교 육 지 도 사	스 포 츠 강 사	운 동 부 지 도 자	늘 봄 지 원 실 장	늘 봄 실 무 사			돌 봄 전 담 사	교 육 복 지 사
남				3						1	1				1		1				1		8
여	1	1	2	9	1	1	1	1	1	2	1	5	1	1		1		1	3	1		1	35
계	1	1	2	12	1	1	1	1	1	2	2	5	1	1	1	1	1	1	3	1	1	1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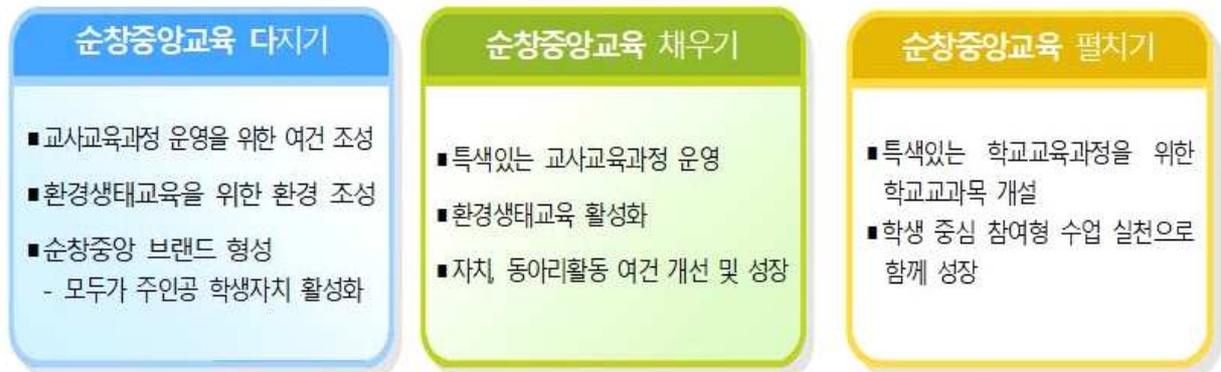
## 4. 시설 현황

종 류	교 실	관 리 실	보 건 실	방 과 후 교 실	연 구 실	자 료 실	화 장 실	강 사 실	영 어 체 험 실	협 의 실	도 서 실	컴 퓨 터 실	학 생 자 치 실	과 학 실	식 생 활 관	음 악 실	예 술 놀 이 터	동 행 관	창 고	문 서 고	상 담 실	샤 워 장	탈 의 실	등 사 실	숙 직 실
수	14	3	1	3	2	1	16	1	1	1	1	1	1	1	1	1	1	2	1	1	2	2	1	1	

## Ⅱ. 학교 교육 계획



### 순창중앙교육 발전 계획



# 학교폭력 예방교육

## 1.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 2. 학교폭력의 유형

<b>언어폭력</b>  <p>욕하기, 동물 별명 부르기, 비난하기, 협박하기, 나쁜 소문 퍼트리기, 명예훼손의 글을 인터넷, SNS에 올리는 행위</p>	<b>따돌림</b>  <p>다른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막기, 조롱하거나 비웃기, 말을 걸어도 무시하고 면박주기, 집단적으로 상대방을 의도적·반복적으로 따는 등의 행위</p>	<b>사이버폭력</b>  <p>본인이 싫어하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올려 찍어 퍼뜨리기, 휴대전화 번호를 인터넷 상에 유포하기, 데이터서들, 카톡방폭, 카톡방폭, 대화명 태러의 같이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괴롭히는 모든 행위</p>	
<b>신체폭력</b>  <p>정난을 빙자한 꼬집기, 때리기, 힘껏 밀치기, 학용품 등 물건을 이용해 상해를 입히기, 신체부위에 침 별기, 신체에 고통을 가하기 등 상대 학생이 폭력으로 인식하는 행위</p>	<b>강요(강제적 심부름)</b>  <p>대신 숙제하기, 책이나 체육복 빌려주기, 방서들과 같이 해야 할 의무가 없는 행동을 강요하여 하게하는 행위</p>	<b>금품갈취(공갈)</b>  <p>둘려줄 생각이 없으면서 돈, 옷, 문구류, 게임기 등을 요구하고 망가뜨리거나 되돌려 주지 않는 행위</p>	<b>성폭력</b>  <p>폭행과 협박을 하며 성적 모멸감이 드는 신체적 접촉을 하거나 말과 행동으로 수치감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p>

## 3. 학교폭력의 피해 징후

1. 갑자기 최근에 안색이 안 좋고 평소보다 기운이 없다.
2. 불안한 기색으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자주 확인하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정서적으로 괴로워 보인다.
3. 단체 채팅방에서 집단에게 혼자만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당한다.

## 4. 학교폭력의 가해 징후

1. 반항하거나 화를 잘 낸다.
2. 귀가시간이 늦거나 불규칙하다.
3. 다른 학생을 종종 때리거나, 동물을 괴롭히는 모습을 보인다.

## 5. 가정 내 학교폭력 예방 지도 방안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자녀들에게 친구를 놀리고 고의로 소외시키거나, 괴롭히는 행동은 학교폭력이라는 사실을 알려준다.</li> <li>2. 학교에서 일어난 일이나 친구관계에 대해서 자녀와 매일 대화의 시간을 갖도록 한다.</li> <li>3. 자녀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꼭 엄마, 아빠한테 얘기해. 우리는 항상 네 편이란다”라고 얘기한다.</li> <li>4. SNS의 위험성, 악용의 결과,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 지켜야 할 예절 등을 교육한다.</li> <li>5. 비싼 물건이나, 전자제품(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을 학교에 가지고 가지 않도록 한다.</li> <li>6. 학교폭력을 목격하거나 사실을 알았을 때 선생님이나 부모님에게 꼭 이야기하도록 당부한다.</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7. 피해를 당할 경우 “그만해”라고 말하며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도록 자녀에게 자기주장을 미리 연습시킨다.</li> <li>8. 주변의 학교폭력 관련 기관의 정보를 미리 알려준다. ※ 학교폭력 신고·상담 : 학교폭력신고센터(117), 학교폭력 SOS지원단(1588-9128), 도란도란(<a href="http://dorandoran.go.kr">http://dorandoran.go.kr</a>)</li> <li>9.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예방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석한다.</li> <li>10. 자녀의 담임선생님과 주기적 상담을 통해 자녀의 학교생활에 관심을 갖는다.</li> <li>11. 학교폭력은 가해자의 잘못이며, 피해자의 잘못이 아님을 인식시켜준다.</li> </ol>
--	--

## 6. 학교폭력 발생 시 대처방안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자녀와 대화를 통하여 충분한 공감과 지지를 해준다. “그런 일은 크면서 겪을 수 있어. 별거 아니야~”라는 식으로 자녀의 상황을 흘려듣지 않고, “혼자 많이 힘들었겠구나. 지금이라도 이야기 해줘서 너무 고마워. 엄마가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 엄마가 도와줄게.” 등의 대화를 통해 힘을 실어준다.</li> <li>2. 피·가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학교에 도움을 요청한다. 집단폭행 및 따돌림 등 지속적이고 심각한 학교폭력 피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때에는 자녀가 겪은 상황에 대해 감정적으로 흥분하지 않고 구체적인 내용과 상황을 학교에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여 진행한다.</li> <li>3.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17 (학교폭력신고센터)</li> <li>- Wee센터(학교, 교육청,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지원하는 다중의 통합지원 서비스망)</li> </ul> </li> </ol>
---

# 도박 예방교육

## 1. 청소년 도박문제 관련 피해 예방 안내

###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온라인 개학 등으로 청소년 도박문제 발생 가능성 증가 우려

- 코로나19 확산 후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시행되며 온라인상에서 다양한 상업적 이해관계에 근거한 도박 관련 마케팅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불법 온라인 도박은 부모가 모르는 사이에 정말 심각한 문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히 어른들이 쉽게 눈치 챌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부모님과 선생님이 아이들의 심리적인 상태와 온라인 도박문제에 대해 먼저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아야 도와줄 수 있습니다.

### □ 청소년 온라인 불법도박의 종류와 발견 방법

<최근 성행하는 불법 온라인 도박>	<도박에 빠졌을 때 청소년이 보이는 모습>
 <p>달팽이 / 사다리 / 로하이</p> <p>파워볼 / 소셜 그래프 / 불법 스포츠 도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갑자기 가족에게 선물을 하거나 용돈을 준다.</li> <li>- 사주지 않은 고가의 물품들을 소지한다.</li> <li>- 집안의 물건들이 없어지거나 본인의 물건을 팔거나 잃어버렸다고 한다.</li> <li>- 스포츠 경기결과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li> <li>- 알 수 없는 명의의 입출금이 반복된 거래 내역이 발견된다.</li> </ul> <p>☞ 자녀의 행동에서 위의 변화들이 생겼다면 도박문제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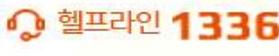
<p><b>대리도박(베팅)과 관련된 청소년 도박문제</b></p>	<p><b>불법대출, 대리입금으로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리도박은 누군가가 대리로나 대신 도박을 해주는 <b>불법 도박의 한 종류</b>입니다.</li> <li>○ 대리 도박은 돈을 아무리 벌어도 먹튀(먹고 튀는) 당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한 큰 금액을 잃거나 도박문제로 협박을 당해도 누군가에게 하소연 할 수도 없습니다.</li> <li>○ 최신 뉴스 기사에서도 초등학생들이 대리도박이나 베팅에 빠진 경우가 기사화 되었습니다. (청소년 불법 도박 심각... 브로커 활동하고 바람잡이 역할까지. <b>조선일보 2019.12.02.</b>)</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리입금이란 연24% 이상 이자를 요구하는 불법고리대금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li> <li>○ 상당수 청소년들은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대리입금을 선호하기도 합니다.</li> <li>○ 고금리 대출로 인해 피해를 당했을 경우 가까운 <b>경찰서로 신고</b>하고, 경찰서에 직접 신고가 어려운 경우 <b>학교전담경찰관(SPO)</b>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 됩니다.</li> <li>○ 학교(SPO)-경찰서 신고체계 구축으로, 학교→학교전담경찰관에게 피해사실이 통보됩니다.</li> </ul>

**□ 도박문제 발견시 대처 방법**

- 도박문제가 의심된다면 가정에서 자녀와 '소통'하셔야 합니다.
  - 자녀와의 소통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부모님의 '간섭'이 아니라 '지지'가 필요합니다.
  -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청소년의 도박문제에 대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위드(WITH) 2022.7월호 [http://jreper2017.cafe24.com/ebook22\\_sum/index.html](http://jreper2017.cafe24.com/ebook22_sum/index.html)
    - '일상 깊이 파고든 청소년 도박문제 현황, 18-19쪽'
  - **도박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다면 전문기관에 도움을 청하시길 바랍니다.**
    - ☞ 전문기관(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상담문의 및 선별검사(CAG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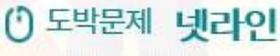
**○ 헬프라인(전화상담)**

- 국번 없이 1336
- 365일, 24시간 운영
- 상담비 무료
- (\*통신비 무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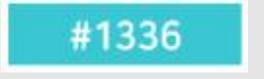
**○ 넷라인(온라인상담)**

- 모바일PC
- <https://netline.kcgp.or.kr>
- 검색창에 '넷라인' 검색
- 상담비 무료
- (\*통신비 발생될 수 있음)



**○ 문자(정보제공)**

- 수신자 번호에 #1336 입력 후 문의 작성 →발송
- 정보제공 무료
- (\*통신비 발생될 수 있음)



**○ 카카오톡 챗봇**

- 카카오톡 채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검색하여 접속
- QR코드 바로 접속



# 아동학대 예방

## 1. 아동학대란 <아동복지법 제3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용어 설명	아동	- 18세 미만인 사람
	보호자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
	아동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는 행위 -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 -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
	아동학대범죄	-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 인하여 형법,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에 규정된 죄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

## 2. 아동학대 신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신고 주체	누구든지	-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신고할 수 있음
-------	------	--

신고 사안 유형	정황발견	- 아동에 대한 폭력·방임·유기 등 아동학대 정황이 발견된 경우
	의심	-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 면담을 거절하여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소재불명	- 아동이 거주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주소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응급	-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 등 피해아동 보호가 응급한 경우

## 3. 아동학대 신고방법

- 신고기관: 국번 없이 112(수사기관), 지자체 아동학대전담부서, 안전dream 앱 등

아이 지킴콜 앱	장점	- 전화 신고가 망설여지는 경우 앱으로 신고 가능
	다운방법	- 아동지킴 또는 안전dream 검색 후 다운로드 - QR코드를 통해 다운로드



# 가정폭력 예방

## 1.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이란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폭력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상황이  
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가져오는 모든 행위

## 2. 가정폭력의 예방법

### 가. 화 조절하기

화는 폭력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화를 조절하는 데에 실패할 경우 심각한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화가 자연스러운 감정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화가 나는 감정이 들게 하는 상황들을 떠올려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화를 조절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 나. 스트레스 관리하기

스트레스는 폭력의 간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폭력발생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터득하여 스트레스를 다스려야 합니다.

### 다. 효과적으로 대화하기

우리나라 속담에는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따뜻한 말을 통해  
서로에게 쌓인 감정들을 풀고 칭찬을 통하여 따뜻한 분위기를 형성합니다.

### 라. 칭찬 한마디 하기

칭찬이 가장 필요하지만 가장 어색한 것도 가족입니다. 칭찬은 부부관계 및 가족관계에  
엄청난 힘을 가져옵니다. 칭찬은 모든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기 때문에 칭찬을 먼저 하는 것은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 3. 가정폭력의 대처법

가. 혹시 지금 피해자라면 **신분증, 신용카드, 통장, 갈아입을 옷** 등은 미리 준비해 놓고 급히  
챙겨 올 수 있는 장소에 보관합니다.

나. 위급한 상황을 대비해 조금이라도 비상금을 마련해 둡니다.

다. 위급상황 발생 시 안전한 장소가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미리 갈 곳과 연락할 사람을 정해 둡니다.

라. 이웃들에게 폭행을 당하는 소리가 나면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 4. 가정폭력 피해 지원 기관



(1577-9337)

# 인권교육

## 1. 인권이란

인권은 말 그대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 권리를 말합니다. 사람이 단순히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누리는 권리가 바로 인권이며 자신의 성격과 지능, 재능, 양심 등을 발전시키는 것 모두가 인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권은 인간이 사회생활을 영위해 가면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도 함께 의미합니다.

## 2.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제시된 만18세 미만의 어린이와 청소년의 권리



### 가. 생존권

생존권은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이들이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데 필요한 권리로서 안전한 곳에서 생활하고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또한 질병이나 장애가 있을 때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님은 아이들에게 균형 잡힌 식사와 계절에 맞는 의복, 안전한 주거 공간을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 나. 보호권

보호권은 아이들이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입니다. 모든 형태의 폭력, 즉 학대와 방임, 차별 등으로부터 보호받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보호권이 지켜지지 않으면 불안, 우울, 비행, 자살 등과 같은 심각하고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부모님들은 가정뿐만 아니라 항상 우리 아이들의 안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 다. 발달권

발달권은 아이들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데 필요한 성장, 발달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아이들의 교육과 관련된 것이며, 여가 문화생활을 누리는 것도 이에 해당합니다.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학습을 위한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 라. 참여권

참여권은 아이들이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자신과 관련된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가족회의를 통해 아이들에게 의견을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3. 가정에서 이렇게 해주세요

아이들은 외모가 다르듯이 다양한 개성과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소중한 존재입니다. 아이들의 기분과 감정에 귀 기울여 주시고 아이들의 힘을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학부모님 스스로가 소중한 존재임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 아이들에게도 그러한 감정을 전해 줄 수 있습니다.

#### 가.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기

매일 아이들과 생활하다 보면 정작 부모 자신에 대한 투자나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시간을 가지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아이들을 돌보는 것은 부모의 당연한 역할이지만 아이 못지않게 자신도 돌보고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취미생활이나 봉사활동도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부모 스스로가 자신을 사랑하고 그런 느낌을 가질 때 아이들에게도 더 많은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 나.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기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하지만 부모가 되면 아이들에게 완벽한 모습을 보여 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부모의 완벽한 모습보다는 실수하는 인간적인 모습에 더 신뢰를 합니다. 자신의 실수에 대해 숨기기보다는 아이들에게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같이 해결해 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다.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기

부모님들은 화가 나도 아이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될 것을 걱정해서 감정을 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숨기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은 아닙니다. "○○야,.....했기 때문에 엄마가 속상해."라고 구체적으로 지적해주면서 이야기하도록 합니다. 부모님이 솔직하게 이야기할 때 아이들도 부모의 감정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 생명존중 및 자살 예방

##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과 대처

### 알아차리기 - 위험신호

- 가. 행동적 의사표현 - 약이나 위험한 물건 수집
  - 의미 있는 소유물 정리
  - 자살사이트, 엽기사이트 등에 심취
- 나. 언어적 의사표현 - 말, 글, 그림, 낙서 등을 통해 자살을 언급
- 다. 상징적 의사표현 - 성적이 떨어지거나 조퇴, 지각, 무단결석이 잦음
  - 평소와 다른 기분 변화나 행동 변화, 식사·수면 상태의 변화

### 가정에서 대처법

#### 정신건강의 위험신호



- 가. 자녀에 대한 세심한 주의와 관찰
- 나. 부모의 모범적인 생활을 통한 모델링 제시
- 다. 자녀에게 충분한 정서적 지원
- 라. 자녀와의 충분한 열린 대화 시간확보를 통한 정서의 변화 파악
- 마. 자녀 칭찬 10계명
  - 1) 칭찬할 일이 생기면 즉시 칭찬하라
  - 2) 잘한 점을 구체적으로 칭찬하라
  - 3) 가능한 한 공개적으로 칭찬하라
  - 4) 결과보다는 과정을 칭찬하라
  - 5)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듯 칭찬하라
  - 6) 거짓 없이 진실한 마음으로 칭찬하라
  - 7) 긍정적으로 생각을 바꾸면 칭찬할 일이 보인다
  - 8) 일의 진척 사항이 여의치 않을 때 더욱 격려하라
  - 9) 잘못된 일이 생기면 야단치기보다 관심을 다른 방향으로 유도하라
  - 10) 가끔 스스로를 칭찬하라

\*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02-6959-4638, <https://smhrc.kr/web/index>

#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

## 1.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

◇ 학교운영위원회나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위원(구성원)인 학부모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가요?

< 예, 맞습니다. >

민간인 신분의 학부모가 학교운영위원회(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위원이 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의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공무수행에 관하여서만 즉, 학교운영위원회(학교폭력 전담기구) 위원으로서의 업무수행에 관하여서만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부정청탁의 금지 및 그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금품등의 수수 금지 및 신고 처리)의 규정이 준용되고, 본래의 직업 또는 사적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제자가 퇴직하신 은사님께 스승의 날 선물로 15만원 상당의 꽃바구니를 드려도 되나요?

< 예, 가능합니다. >

퇴직자는 퇴직 후 공직자등 또는 공무수행사인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동법의 규율을 받지 않습니다.

◇ 학부모가 학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방과 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업체의 소속 직원인 방과후 교사에게 6만원 상당 스카프를 선물해도 되나요?

< 예, 가능합니다. >

학교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소속 직원인 방과후 교사는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이 아니므로 동법의 규율을 받지 않습니다.

◇ 유치원 선생님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요?

< 예, 맞습니다. >

초·중·고등학교 뿐만 아니라 유치원도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각급 학교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초·중·고등학교 교직원뿐 아니라 유치원의 교직원도 같은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라 “공직자등”에 해당되므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입니다.

◇ 방과 후 교사와 기간제 교사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요?

방과 후 교사는 교원이 아니므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반면, 기간제 교사는 교원(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으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입니다.

## 2. 선생님에게 제공되는 선물 등 관련

◇ 스승의 날 담임선생님께 학생이 직접 쓴 손편지나 카드를 드리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나요?

< 예, 가능합니다. >

특별히 과도한 경우가 아니라면 학생이 직접 쓴 손편지, 카드를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 스승의 날 담임선생님께 카네이션을 드리는 것이 가능한가요?

< 예, 가능합니다. >

학생대표 등이 스승의 날에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 꽃은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금품등의 내용이나 가액 등에 비추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스승의 날 학급 학생들이 돈을 모아 담임선생님께 5만원 이하의 선물을 할 수 있나요?

< 안됩니다. >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원(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경우 10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 학부모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이 스승의 날에 교장, 교감 선생님께 5만원 상당의 선물을 해도 되나요?

< 안됩니다. >

학생들의 성적, 수행평가, 진학 관련 추천 등 학교생활 전반을 관장하는 교장, 교감선생님과 학부모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 간에는 밀접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가액기준 내의 선물이라도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 담임선생님과의 면담시 음료수라도 드리고 싶은데 청탁금지법상 괜찮은 것이지요?

< 안됩니다. >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원(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경우 10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 담임선생님의 결혼식에 축의금을 드릴 수 있나요?

< 안됩니다. >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의 경조사비는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 자녀의 수학선생님이 결혼을 하시는데, 학생들이 수학선생님의 결혼식에서 축하를 부르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나요?

< 예, 허용됩니다. >

학생들이 교사의 결혼을 축하하는 의미로 식당에서 축하를 부르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금품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자녀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3년간 다닌 중학교선생님들께 작은 감사의 선물을 드려도 될까요?

< 예, 가능합니다. >

상급학교로 진학한 후에는 이전 학교에 재학했던 학생(학부모)과 교사 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1회 100만원, 연 300만원 이내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는데 이전 학교 담임선생님이셨던 분께 스승의 날 선물을 드려도 되나요?

< 예, 가능합니다. >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학생(학부모)과 이전 학교 담임선생님 사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1회 100만원, 연 300만원 이내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졸업식 당일에 담임선생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선물을 하고자 하는데 가능한가요?  
◇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를 졸업하는데 동생이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 경우 첫째 아이의 담임선생님께 졸업식 날 선물을 드려도 되는지요?

< 예, 가능합니다. >

성적평가 등 학사일정이 완전히 종료된 경우라면 졸업식 날 이후에는 학생과 담임교사 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1회 100만원, 연 300만원 이내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동생이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라면 해당 학부모와 교사간에는 통상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나,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은 10만원)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첫째아이의 담임선생님이 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인 경우에는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 자녀가 초등학교 1학년을 마치고 2학년에 올라갔습니다. 1학년 담임선생님께 작은 감사의 선물을 드려도 될까요?

< 예, 가능합니다. >

학생에 대한 성적평가 등 학사일정이 완전히 종료된 경우라면 졸업식 날 이후 전 학년도 담임 선생님께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하는 5만원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경우 10만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 학년 담임선생님이 진급한 이후에도 해당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인 경우에는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 자녀가 학교 운동부에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부 학생들의 부모들이 비용을 모아서 학교 직원인 운동부 지도자의 임금을 지급하거나 전지훈련비, 간식비를 지원할 수 있나요?

< 안됩니다. >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제32조에 따른 절차에 따라 학교 운동부 관련 후원금을 학교회계에 편입하여 적법하게 운영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됩니다.

### 3. 학생·학부모에게 제공되는 선물 등 관련

◇ 담임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간식을 주어도 되나요?

◇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자녀의 생일에 반 친구들과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케이크나 간식을 보내도 되나요?

◇ 각종 기념일에 학급 학생들끼리 선물이나 과자를 주고받아도 되나요?

< 예, 세 경우 모두 가능합니다. >

학생은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담임 선생님이 학생에게 학업 성취에 대한 보상의 일환으로 간식 등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학부모가 자녀의 생일에 친구들과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케이크나 간식을 보내는 것은 청탁금지법의 규율을 받지 않습니다.

◇ 학교운영위원회 회의가 끝난 후 학교에서 학부모위원에게 식사를 제공할 수 있나요?

< 예, 가능합니다. >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은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므로 공무수행에 관하여서는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회의가 끝난 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내의 식사인 경우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이 교장, 교감선생님께 5만원 상당의 선물을 드려도 되나요?

< 안됩니다. >

학생들의 성적, 수행평가, 진학 관련 등 학교생활 전반을 관장하는 교장, 교감선생님과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간에는 밀접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가액기준 내의 선물이라도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 공무수행사인이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 1. 공무수행사인

교육청(직속, 소속 기관 및 학교 포함)의 공무를 수행하는 **공직자가 아닌 법인 또는 단체, 기관이나 개인**(이하“공무수행사인”)

- 법령(조례, 규칙 포함)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 불문)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예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학교급식법」에 따른 **학교급식위원회**  
「전라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학부모회** 등
-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소관 사무를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대표자 및 업무종사자)
-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2.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 3. 적용 분야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부정청탁의 금지</li><li>✓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li><li>✓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li><li>✓ 금품등 수수의 금지</li><li>✓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b>사적이해관계자*</b>의 신고 및 회피 신청</li><li>✓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li><li>✓ 부당이득의 환수 등</li></ul>

### 사적이해관계자\*

- 자신 또는 그 가족, 자신(가족)이 임원·대표자 등으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 자신(가족)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법인·단체
-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재직했던 법인·단체
-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재직했던 자신(가족)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법인·단체
- 자신(가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의 주식·지분 등을 소유한 법인·단체
-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공직자로서 퇴직일 2년 이내에 실·국·과장으로서 자신을 지휘·감독했던 상급자
- 최근 2년 이내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전거래의 상대방

# 촌지수수 및 불법찬조금 모금 근절 대책

## 1. 촌지 및 불법찬조금 정의

### 가. 촌지란

사전적으로는 '마음이 담긴 작은 선물'이라는 의미이지만 학교현장에서 우리 아이가 차별받지 않고 더 보살핌을 받기를 바라며 건네는 현금이나 물품으로 교육계의 이기적이고 비인격적인 문화임

### 나. 불법찬조금이란

“초·중등교육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4조에 정해진 학교발전기금의 목적, 조성 절차와 방법 등을 위반하여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조성한 금품임

## 2. 촌지 및 불법찬조금 유형

### 가. 촌지 유형

- 1) 현금 및 상품권, 고가의 명품백 등
- 2) 최근 카카오톡 선물과 같은 SNS 상품권 등

### 나. 불법찬조금 유형

- 1) 학부모대표 등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학부모들로부터 일정액을 모금, 접수하는 경우
- 2) 간부학생 등의 학부모를 중심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하는 사례
- 3) 학교발전기금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정상적으로 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학부모회, 학급임원회, 운동부, 기숙사 등에서 임의적으로 접수 및 운영하는 사례
- 4)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부모회, 학급임원회 등에서 개별적인 접촉 또는 전화 등을 통해 학생간식비, 학교행사 지원, 교직원 선물비 등의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하는 사례
- 5) 기타 법령이나 학교발전기금의 목적을 벗어나는 기부행위

## ※ 촌지수수 및 불법찬조금 신고센터 운영 안내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청렴하고 투명한 교육행정 구현을 위하여 촌지수수 및 불법찬조금 관련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전라북도교육청 신고센터

- 홈페이지(www.jbe.go.kr)/전자민원/원클릭신고센터/촌지수수.불법찬조금신고
- 촌지수수 신고(☎ 063-239-3300 교원인사과)
- 불법찬조금 신고(☎ 063-239-3576 예산과)

※ 내 자녀에 대한 막연한 기대심리로 촌지를 제공해서는 안 되며, 합법적인 학교발전기금 이외의 일체의 불법찬조금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 교육활동 보호

## 교육기본법 제13조(보호자) 제3항

부모 등 보호자는 교원과 학교가 전문적인 판단으로 학생을 교육·지도 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 1. 교육활동 보호의 중요성

- 가. 교육활동 침해로 인해 선생님의 교육활동이 위축됩니다.
- 나. 선생님이 전문성을 발휘하여 교실혁명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 다. 선생님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일은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일이자 궁극적으로 '우리 아이'를 보호하는 일입니다.

## 2. 교육활동 침해행위

- 가. 「형법」에 따른 **공무방해에 관한 죄, 무고의 죄, 상해와 폭행의 죄, 협박의 죄, 명예에 관한 죄, 업무방해 또는 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 ✓ 학생의 보호자가 수업 중인 교실로 들어와 자녀를 괴롭힌 학생을 혼내고, 만류하는 교원을 협박하여 수업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
  - ✓ 학부모가 '교원이 수업 중 학생을 때렸다'는 허위 사실을 만들어 국민신문고에 거짓 민원을 제기한 경우
  - ✓ 교원에게 고함을 지르며 지속적 폭언을 하는 경우
- 나.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행위
  - ✓ 교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세지를 보내는 경우
- 라.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행위로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 ✓ 담임교사의 주소를 알아낸 뒤 스토킹하는 경우
- 마. 5.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한게 간섭, 제한하는 행위
  - ✓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 학부모가 학생 지도에 불만을 품고 담임교체를 요구하는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경우
  - ✓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 아이 취향에 맞는 급식 메뉴를 별도로 만들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 항의하는 경우
- 바. 그 밖에 교육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 ✓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 교사의 반복된 중단 지시에도 불구하고, 교실을 돌아다니면서 장난을 거는 등 수업을 진행할 수 없는 언동을 하는 경우

- ✓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 화상, 음성 등을 **촬영, 녹화, 녹음, 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 ✓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제4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 \* 교원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 제한하는 행위

### 3.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따른 조치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신고 시, **지역교원보호위원회** 개최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처분

- ✓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 ✓ 교육감이 정하는 기관에서의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 정당한 사유없이 특별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심리치료에 참여하지 아니한 보호자 등에게는 관할청에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 시, 교육감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 ○○교육청, 교사 대상 3년간 20여건의 민원·소송 등을 제기한 학부모를 고발(24.4.18.)

### 4. 상담 종결 사안

보호자 등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담을 요청**하시거나, **의견**을 **제안**하실 수 있습니다.

단.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답변을 거부하고 종결할 수 있습니다.

- ✓ 교원 개인의 휴대전화 또는 SNS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 ✓ 교원의 사생활 등 교육활동과 무관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 ✓ 교원의 직무 범위 외 사항 및 위법 부당한 사항을 요구하는 경우
- ✓ 합리적인 답변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지속적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경우

### 5. 상담 신청 방법

- ✓ 선생님과 상담을 희망하실 경우, 미리 '약속'을 잡아주세요.
- ✓ 선생님이 사전에 알려준 방법으로 상담 예약을 잡습니다.
- ✓ 학부모 상담주간을 이용하기
- ✓ 학교 대표번호(교무실:653-2524), 학교 누리집 등을 통해 신청하기
  - 학교 누리집 (<https://school.jbedu.kr>) → 쿼메뉴 → 학부모 민원상담 예약신청
- ✓ 학교종이/ 종이톡 등을 통해 신청하기

교원의 정당한 지도에 대한 부모님의 지원 및 존중은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을 존중하는 학교 문화의 시작입니다.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

## 1. 추진근거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공포(2014.3.11.)
-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 선행교육 근절 추진 계획(2014.7.7.)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2014.9.12.)

## 2. 추진목적

- 선행교육과 선행학습 유발 관행 근절을 통한 학교 교육과정 정상화 및 인식 전환 추진
-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출제문항 최적화를 통한 공교육정상화법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

## 3. 용어 정의

용어	주체	의미
선행교육	교육관련기관 (학교)	학교 교육과정에 앞서서 편성 또는 제공하는 교육 일반 (학교가 편성한 교육과정과 다르게 다음 학기/학년/학교급에서 가르쳐야 할 내용을 미리 가르치는 것)
선행학습	학생	학교 교육과정에 앞서서 하는 학습 (학생이 사교육 등을 통해 다음 학기/학년/학교급에서 배워야 할 학교 수업 내용을 미리 공부하는 것)
선행출제	교육관련기관 (학교)	학교가 현재 편성한 교육과정과 다르게 다음 학기/학년/학교급에서 가르쳐야 할 내용을 각종 교내 시험에서 출제하는 것

## 4. 학교 책무성

### < 특별법 제5조 제2,3,4항 '학교장의 책무' >

- ②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서 선행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학부모·학생·교원에게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④ 학교의 장은 제3항의 내용을 포함한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예방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학교장 결재)

## 5. 선행학습의 폐해

**선행학습이란** 학습자가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미리 배우는 것으로 통상적 예습의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선행학습에 대한 사회적, 교육적 폐해는 심각하다 할 수 있으며, 그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음.

---

### ○ 다른 학습자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 침해

학생이 수업 내용을 미리 알고 있을 경우 학생 자신은 학교 수업의 적극성이 결여되고 교사는 학생들이 이미 알 있다고 판단하여 기본개념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는 악순환으로 인한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이 침해를 받게 됨.

### ○ 사고력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저하

학교교육과정은 학생의 인지, 정서 및 사회발달 단계와 사고의 수준을 고려하여 구성되어 있으나 발달 단계와 사고의 수준을 넘어서는 내용의 학습으로 충분히 사고하고 이해하려는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 떨어져 피상적이고 기계적인 문제 풀이 학습에 치우치게 되어 사고력, 흥미도 및 집중력 저하 등 다양한 문제를 파생시키게 됨.

### ○ 남보다 앞서 나가기 위한 지나친 속도 경쟁

선행학습을 하는 내용이 곧 그 학생의 실력이라는 잘못된 편견(예: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중학교 1학년 수학을 하고 있으면 중학교 2학년 수학을 공부하는 학생이 더 잘한다는 인식)으로 인하여 선행학습은 무한 속도 경쟁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나 사고력 저하로 대학입시에서는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음.

### ○ 학부모의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통계청이 발표(2020.3.10.)한 2019년 초·중·고등학교 사교육비 총액은 약 21조원으로 이는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저출산과 노후 준비를 못하는 등 에듀푸어 양산은 중산층 붕괴를 가속화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 6. 교육과정 정상화 운영 계획

-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과정정상화심의회위원회 운영: '25.1.1.~'26.12.31.(2년)
-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교육과정 정상화 전담기구 운영
- 학교별 교육과정정상화위원회 운영
- 입학전형영향평가심의(특목고, 자사고 등)

# 나이스 학생·학부모 서비스 안내

## 1. 나이스 학생 서비스 안내

### 가. 나이스 학생서비스 제공목적

- 학생서비스는 학교생활기록부, 건강기록부, 성적, 출결사항, 학사일정, 급식정보 등을 인터넷을 통해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로, 학생의 학교생활정보를 활용하여 자기주도적인 교육환경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 나. 나이스 학생서비스 서비스 대상

-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전 학교급 자료 열람은 불가하오니 민원서비스를 통한 교육제증명 발급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다. 나이스 학생서비스 이용방법

나이스대국민 사이트 접속

인터넷 브라우저를 이용하여, 나이스 대국민 사이트 ([www.neis.go.kr](http://www.neis.go.kr)) 에 접속합니다

 회원가입

회원구분(만 14세 미만, 만 14세 이상)에 따라 가입절차에 차이가 있으므로 연령대에 맞게 선택한 후 가입신청을 진행합니다.(만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보호자 동의 필요)

 아이디/비밀번호 로그인

나이스대국민서비스 접속 후 학생서비스를 선택하여 아이디/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로그인 합니다

 학생용 인증서 발급

학생용 인증서 발급 사이트([keris.signgate.com](http://keris.signgate.com))에 접속하여 학생용 인증서를 발급받습니다.

 인증서 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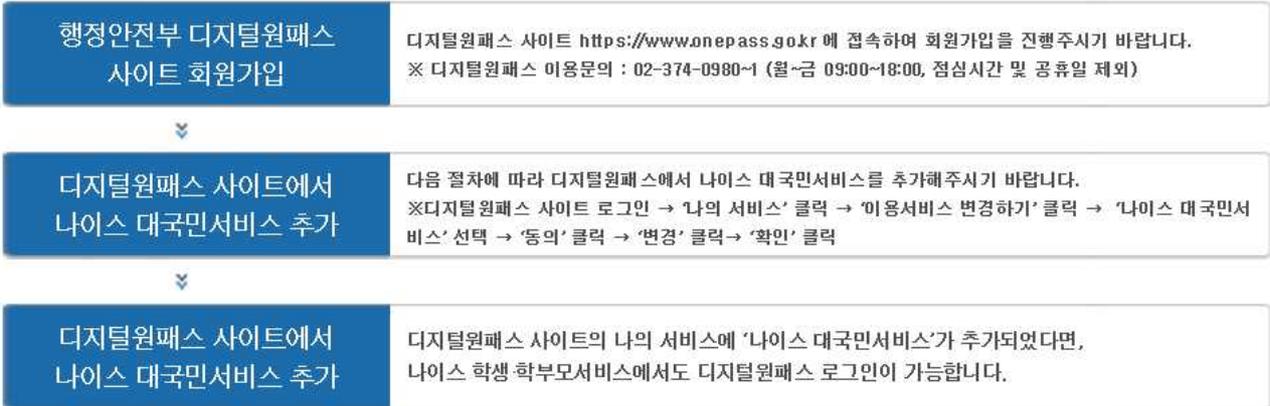
발급받은 학생인증서를 '인증서 발급/등록' 메뉴에서 등록합니다

 학생서비스 이용

등록한 인증서로 로그인 후, 학교생활 정보를 언제, 어디서든 확인할 수 있는 나이스 학생 서비스의 모든 항목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라. 나이스 학생·학부모서비스 디지털원패스 로그인 이용방법

- 디지털원패스 로그인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나이스 학생·학부모서비스 회원가입 및 인증서 등록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디지털원패스 인증수단(보안수준)에 따른 나이스 학생·학부모서비스 로그인 형태(제공 서비스)

디지털원패스 인증수단 (보안수준)	나이스 학생·학부모서비스 로그인 형태(제공 서비스)
보안수준 높음 : 공인인증서, 지문인증, 안면, 패턴, PIN	▶ 인증서 로그인과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 제공
보안수준 낮음 : SMS(문자), 패스워드	▶ 아이디 로그인과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 제공 ※ 학교생활기록부, 성적표 등 일부 서비스 제한

- 디지털원패스 인증수단은 추후 행정안전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2.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 안내

### 가. 나이스 학부모서비스 제공목적

- 학부모서비스는 열람서비스로서 학교를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학교정보 뿐만 아니라 자녀의 성적, 출결, 학교생활기록부 등 자녀의 학교생활을 인터넷으로 한 눈에 열람할 수 있고 선생님과 상담, 가정통신 등 학교와 학부모간 상호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를 통해 학부모의 교육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교육기본법 제13조에서 보장하는 학부모의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 나.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 대상

-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는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전 학교급 자료 열람은 불가하오니 민원서비스를 통한 교육제증명 발급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다.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 이용방법

나이스대국민 사이트 접속	인터넷 브라우저를 이용하여, 나이스 대국민 사이트 (www.neis.go.kr) 에 접속합니다
회원가입	절차에 따라 학부모회원 가입신청을 진행합니다.
아이디/비밀번호 로그인	나이스대국민서비스 접속 후 학부모 서비스를 선택하여 아이디/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로그인합니다
학부모 인증서 발급	보유하고 있는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인증서 발급/등록' 메뉴에서 학부모 인증서를 발급받습니다.
인증서 등록	보유중인 공인인증서를 '인증서 발급/등록'메뉴에서 등록합니다
학부모서비스 이용	등록한 인증서로 로그인후, 학교생활 정보를 먼저, 어디서든 확인할수 있는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의 모든 항목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 서비스 신청 필수)

## 라. 나이스 학생·학부모서비스 디지털원패스 로그인 이용방법

- 디지털원패스 로그인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나이스 학생·학부모서비스 회원가입 및 인증서 등록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디지털원패스 사이트 회원가입	디지털원패스 사이트 <a href="https://www.onepass.go.kr">https://www.onepass.go.kr</a> 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진행주시기 바랍니다. ※ 디지털원패스 이용문의 : 02-374-0980~1 (월~금 09:00~18:00, 점심시간 및 공휴일 제외)
디지털원패스 사이트에서 나이스 대국민서비스 추가	다음 절차에 따라 디지털원패스에서 나이스 대국민서비스를 추가해주시기 바랍니다. ※ 디지털원패스 사이트 로그인 → '나의 서비스' 클릭 → '이용서비스 변경하기' 클릭 → '나이스 대국민서비스' 선택 → '동의' 클릭 → '변경' 클릭 → '확인' 클릭
디지털원패스 사이트에서 나이스 대국민서비스 추가	디지털원패스 사이트의 나의 서비스에 '나이스 대국민서비스'가 추가되었다면, 나이스 학생·학부모서비스에서도 디지털원패스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 디지털원패스 인증수단(보안수준)에 따른 나이스 학생·학부모서비스 로그인 형태(제공 서비스)

디지털원패스 인증수단 (보안수준)	나이스 학생·학부모서비스 로그인 형태(제공 서비스)
보안수준 높음 : 공인인증서, 지문인증, 안면, 패던, PIN	인증서 로그인과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 제공
보안수준 낮음 : SMS(문자), 패스워드	아이디 로그인과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 제공 ※ 학교생활기록부, 성적표 등 일부 서비스 제한

- 디지털원패스 인증수단은 추후 행정안전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정보통신윤리교육 및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 1. 자녀에게 말해주어야 할 인터넷 이용 수칙

- 가. 부모의 허락 없이 사이버 공간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절대로 직접 만나면 안 된다.
- 나. 부모의 허락 없이 부가적인 요금을 내야 하는 정보나 사이트에 접근해서는 안 된다.
- 다. 인터넷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계획이나 행선지 그리고 현재의 소재지 등을 알려주어서는 안 된다.
- 라. 인터넷상에서는 이름, 나이, 주소, 전화번호, 학교이름, 비밀번호 등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는 부모의 허락 없이 절대로 노출시키지 말아야 한다.
- 마. 폭력적이거나 불건전한 내용의 전자우편이나 의심스러운 제의 등에 대해서는 일체 답장하면 안 된다. 이런 메시지를 받게 되면 반드시 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 2. 자녀에게 개인정보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기

- 가. 자신의 ID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타인의 ID를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 나. 개인 정보는 개인의 매우 중요한 정보 재산이므로 소중하게 취급하여야 함을 강조한다.
- 다. 공공장소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던 중에 자리를 일시적으로 비울 경우를 대비하여 암호화한 화면보호기를 설정한다.
- 라. 전자 상거래 정보 및 개인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반드시 상대 기업 및 상대 사이트의 이용 약관이나 개인 정보 보호 방침 등을 반드시 읽어보고 개인 정보 관리 정책을 확인한 후에 자신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가르친다.

## 3. 우리 아이 네티켓 키우기

- 가. 자녀들과 함께 적절한 사용 규칙과 가이드라인을 정한다.
- 나. 컴퓨터는 가족이 공유하는 장소에 놓아라. 자녀들의 활동을 지켜볼 수 있게 되어 보다 건전한 정보통신 이용을 유도함은 물론, 부모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진다.
- 다. 자녀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가져라.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상태 모두에서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자녀들에게 많은 시간을 할애해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함께 하는 것이다.
- 라. 신상자료를 함부로 공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시켜라. 인터넷상의 낯선 자에게 집 주소나 학교명, 전화번호 등 사적인 개인정보를 함부로 공개하지 않도록 주의시켜야 한다.

## 4. 게임·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 생활지도

- 심야시간대의 인터넷 게임 제공시간 제한제도 및 게임시간 선택제 활용

# 교직원 홈페이지 개인정보 제공 기준 안내

## 1. 개요

- (검토배경) 홈페이지를 통한 교사 개인정보 제공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국민청원 및 민원이 다수 제기됨  
※ 청와대 국민청원 내용 일부 발췌(20.3.29.)  
“ 교육청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교사의 사생활 정보가 왜 모두에게 공개되어야 합니까. 제가 어느 학교에서 근무하는지 이름만 치면 공지사항에 모두 볼 수 있게 해놓은 제도가 불합리하다고 민원을 넣었지만, 재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답변만 얻었고 그래서 학교를 옮기면서 또 개명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교사의 인권은 어디에서 보장받을 수 있나요. ”
- (현황 및 문제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교육청 홈페이지에 인사발령 정보 공개 및 홈페이지에 직원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최근 이런 개인정보를 악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공개 차원에서 제공되는 여러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강화가 요구됨.

### 《 홈페이지 개인정보 공개 사례 》

- ◆ 학교 기관 홈페이지에 재직 중인 교사의 '직위, 성명, 담임반, 업무(담당과목), 학교연락처'를 안내
- ◆ 교사의 인사발령 사항(소속, 성명, 직위, 발령날짜, 과목)을 교육청 대표 홈페이지에 게재

## 2. 검토내용 및 결과

- (정보공개 측면) 교사의 성명, 직위 등에 대한 정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지 여부는 기관 및 업무 특성 등에 따라 기관 자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임(행안부 정보공개정책과, '20.4.17.)
  - 단, 이전 근무지 및 담당 직명, 보직 경로에 대한 것(인사발령 기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내용이 공개될 경우 궁극적으로 특정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비공개가 가능 (출처: '19.정보공개 운영 안내서 142p, 행안부)
- ※ 행안부 정보공개정책과에 관련사항 유권해석 의뢰 결과(20.4.17.)

Q.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교육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교사정보(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데 동 법률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견

A. 학교(사립학교 포함)에 재직 중인 교사의 성명, 직위 등에 대하여 공개를 요구 받은 경우 해당 정보는 공개 가능할 것이며, 홈페이지 등 공개 여부는 기관 및 업무 특성 등에 따라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음

-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2항은 공시정보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홈페이지를 통한 개인정보 제공 건에 대해서는 동 법을 적용하지 않음 (교육통계과, '20.4.6.)

- (개인정보보호 측면) '성명, 연락처, 이메일 주소, 사진 등'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제1항제2

호 및 제18조2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사항\*이 없다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제공할 수 있음 (행안부 개인정보정책과, '20.6.10.)

\* 다른 법률에서 규정,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

○ (결론) 이에 따라, 홈페이지를 통한 학교 교사 및 직원의 개인정보\* 제공에 관하여 관련 법령 및 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유치·중등학교 교사 및 직원 대상(교장 및 교감은 제외)

☞ 개인정보처리자(기관 등)는 국민의 알 권리 충족, 기관 업무 및 이용자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교사와 직원의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하고, 불가피하게 개인정보를 포함할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또는 법률\*에 근거하여 처리해야 함

\*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의 제공을 요구·허용하는 경우를 말함

☞ 우리 학교는 교사 및 직원의 개인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고자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안내장의 담당자란에 '교무실', '행정실' 등 대표성을 띤 각 실의 이름만 제공합니다.

# 성폭력 예방

사이버성폭력 예방

## 사이버성폭력이란?

불법촬영 및 불법촬영물 유통·유포협박·저장·전시 등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몸 사진·동영상 등 요구·협박

물건 사진·동영상 촬영하거나 유포

다른 사람 사진 성적 협상·유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다운로드

사이버성폭력 예방

## 조심해야 할 것

- 낯선 사람에게 사진과 개인정보를 공유하지 않기
- 이유 없이 문화상품권, 게임 아이템 등 대가를 주려는 사람 거절하기
- 검증되지 않은 파일 설치하지 않기
- 성별이나 나이가 드러나는 아이디 사용하지 않기
- SNS 등의 계정 비밀번호 오래 사용하지 않기
- 경찰관은 절대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니, 경찰관 사칭에 주의하기
- 인터넷에서 거래를 할 때 개인정보 노출 주의하기
- 조건안남·성매매의 위험성이 있는 앱 주의하기

사이버성폭력 예방

## 이렇게 행동해요

**만남 요구**

낯선 사람이 오픈채팅에서 만나자고 할 때  
 ❖ 만남 거절하고 대화 중단하기  
 권유채팅방에서 대가성 만남을 요구할 때  
 ❖ 용하지 않고 캠퍼해서 신고하기

**불법촬영 협상·성상 유포**

화장실 등에 의심스러운 물건이 보일 때  
 ❖ 즉시 112 신고하기  
 불법촬영이 의심될 때  
 ❖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즉시 112 신고하기  
 몸 사진을 보낸 후 유포하겠다고 협박받았을 때  
 ❖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즉시 신고하기  
 지인이 합성된 사진·영상을 봤을 때  
 ❖ 당사자에게 알리고 신고 도와주기

**성적 문자 영상 전송**

친구가 올린 성적인 영상을 보고 불쾌할 때  
 ❖ 불쾌할 표현하기 / 대화 중단·신고하기  
 성적인 욕설, 몸 사진·영상을 받았을 때  
 ❖ 대화 중단·신고하기  
 SNS에서 성적인 영상을 받을 때  
 ❖ '신고 / 스톱' 누르기 / 다른 곳에 게시하지 않기  
 몸 사진전송을 요구받았을 때  
 ❖ 절대 용하지 않기 / 대화 중단하기

사이버성폭력 예방

## 도움을 요청해요

언제든지 도와드려요!

**시간을 수사해주세요**

경찰 (112-117 / 총 112긴급신고-스마트국민센터 / 학교현장경찰관)

**협상 유포를 막아주세요**

디지털성범죄피해지원센터 (02-735-8994, www.women1366.kr/dpds)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377)

**성당을 받고 싶어요**

디지털성범죄피해지원센터 (02-735-8994, www.women1366.kr/dpds)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388, www.cyber1388.kr)  
 여성긴급전화 1366 (1366)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02-817-7959, hotline@cyber-kan.com)  
 한국성폭력상담소 (02-338-5807)  
 심대여성인권센터 (010-3232-1318, 카톡: 직책 cybersat01)

- ❑ 피해를 입은 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 ❑ 혼자 고민하지 말고 도움을 받으세요.
- ❑ 주변에 고민하는 친구가 있으면 도와주세요.

◆ **경계 침해의 종류 자녀와 함께 알아보세요. (학폭으로 이어질 수 있는 행동들)**

1. 물리적 경계 침해	2. 신체적 경계 침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대방의 물건 빼앗기</li> <li>• 노크하지 않고 문 벌럭 열기</li> <li>• 동의 없이 상대방 물건을 가져와서 보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머리카락 잡아당기기</li> <li>• 친근감을 표현한다고 주먹으로 치거나 발로 차기</li> <li>• 어깨 주무르기 등 원치않는 신체 접촉</li> </ul>
3. 시각적 경계 침해	4. 언어·정서적 경계 침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른 사람의 몸 몰래 엿보기</li> <li>• 자신의 몸을 일방적으로 보여주기</li> <li>• 음란물 보여주기</li> <li>• 인터넷이나 SNS에 허락 받지 않고 사진이나 동영상 올리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난하기, 무시하기, 계속 전화하기</li> <li>• 비웃기, 깔보기, 놀리기, 창피주기</li> <li>• 소리 지르기, 위협하기, 무작정 찾아오기</li> <li>• 상대방이 뭐 하는지 계속 물어보기</li> <li>• 싫다고 하는데도 상대방 따라다니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대방이 자신의 경계를 넘어올 때 싫으면 '싫어', '멈춰'라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말을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잘못이 아닙니다.</li> <li>• 다른 사람의 경계에 들어가고자 할 때는 반드시 동의(허락)를 구해야 하며 상대방이 거부 할 경우 이를 존중해야 합니다.</li> </ul>	

◆ **보호자가 알아야 할 디지털 성폭력 예방 안전수칙(7가지)**

- 아동 청소년의 온라인 활동에 관심을 갖고 충분한 대화를 나눕니다.
- 온라인에 올리거나, 타인에게 전송하지 않도록 알려줍니다.
- 동의하지 않은 사진과 동영상 유포, 성적 이미지 합성 등 디지털 성폭력 위험성에 대해 알려줍니다.
- 잘 모르는 사람이 개인정보를 묻거나 만남을 요구하면 반드시 알릴 것을 당부합니다.
- 피해 사실을 알았을 때 아동·청소년의 잘못이 아님을 알려주고 진심으로 지지해줍니다.
- 아동·청소년의 피해가 있을 경우 관련 증거자료를 수집합니다.
- 피해 사실을 알았을 때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출처: 교육부 누리집 [카드뉴스]>

※ **여성가족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02)735-8994, 긴급전화 1366(24시간 상담가능)**

# 양성평등교육

## 1. 양성평등이란?(양성평등기본법 제3조1항)

-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는 것
-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

## 2. 대중매체 속 성역할 고정관념 알기

- 광고는 변화하는 사회상을 빠르게 반영합니다.
- 기업은 상품 판매를 위해 소비자에게 익숙한 가치관과 인식을 이용하고 자극적인 재현을 시도합니다. 이로 인해 광고에서 잘못된 성역할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 자녀에게 대중매체 속 성역할 고정관념을 알아 볼 수 있는 비판적 관점을 길러줍니다.

## 3. 학교 양성평등 교육 안내

- |   |   |   |
|---|---|---|
| 초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배려와 존중의 양성평등</li><li>• 서로의 성을 존중하는 태도, 방법 알기</li><li>• 경계 존중과 동의 알기(성희롱·성폭력 예방)</li></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성의 개념 알기(생명존중)</li><li>• 사춘기 신체 변화와 배려</li><li>• 디지털 성범죄 예방</li></ul> |
|---|---|---|

# 흡연 예방교육

## 1. 흡연, 약물(마약 포함) 오남용 예방교육의 필요성

- 성장기 청소년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또 다른 일탈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증대
- 다크웹·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상화폐를 이용한 인터넷 거래 증가로 온라인 접근성이 높은 10대 학생을 대상으로 한 마약 범죄 증가
-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의거 초·중·고등학교 5차시 약물중독예방 교육 실시

## 2. 담배 없는 학교를 위한 가정의 역할

- 학생을 흡연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있어 부모님들은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으며, 가족 내 흡연자가 있다면 자녀가 담배를 경험할 위험성이 매우 높음.
- 금연은 의지가 중요하지만, 의지만으로 금연에 이르는 흡연자는 3%에 불과함.  
국가에서 지원하는 금연지원서비스를 확인하고 전문적인 도움을 요청하고, ☎ 1544-9030  
가까운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이용.

## 3. 올바른 약물 사용 수칙

✓ 약은 반드시 의사, 약사 등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만 사용하기
✓ 약 사용하기 전 이름, 모양, 사용기한 등 정보 확인하기
✓ 약의 정해진 용량 및 용법을 지켜 물과 함께 복용하기
✓ 자신에게 처방된 약만 먹기. 증상이 비슷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약을 같이 먹지 않기
✓ 카페인 등 중독성 물질이 함유된 식품과 약물의 사용 자제하기
✓ 부작용이 나타나면 복용을 멈추고 병원 가기
✓ 약 유효기간 및 보관 방법 지키기

## 4. 마약의 특징

마약류란 일반적으로 느낌, 생각 또는 행태에 변화를 줄 목적으로 섭취하여 정신에 영향을 주는 물질.

- ✓ 약물 사용에 대한 욕구가 강제적일 정도로 강하다.(습관성)
- ✓ 사용 약물의 양을 점차 증가시켜야 한다.(내성)
- ✓ 약물 사용을 중지하면 신체에 견디기 힘든 증상이 나타난다.(금단증상)
- ✓ 그 피해가 개인에 국한되지 않고 이웃과 사회에 영향을 미친다.

### ■ 신고 및 도움기관

- ✓ 마약신고 1301(검찰청), 112(경찰청), 125(관세청)
- ✓ 마약중독 치료 및 재활(보건복지부) 129, 학교전담경찰관 상담 117
-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1899-0893(<http://www.drugfree.or.kr/>)

# 미세먼지 대응 방안

## 1. 미세먼지 실시간 농도 확인

스마트폰 앱 “airkorea”, “우리 동네 대기정보”: 미세먼지 농도 확인, 예·경보 알림 수신 신청

## 2. 미세먼지 발생 시 7대 행동 요령

- 1) 외출은 가급적 자제하기: 야외모임, 캠프, 스포츠 등 실외활동 최소화
- 2)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식약처 인증) 착용하기 : 폐기능 질환자는 의사와 상의 후 마스크 사용 권고
- 3) 외출 시 대기오염이 심한 곳은 피하고, 활동량 줄이기
- 4) 외출 후 깨끗이 씻기  
: 샤워하고, 특히 필수적으로 손·발·눈·코를 흐르는 물에 씻고 양치질하기
- 5)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 항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야채 등 충분히 섭취하기
- 6) 환기, 물청소 등 실내 공기질 관리하기
- 7) 대기오염 유발행위 자제하기: 자가용 운전 대신 대중교통 이용, 폐기물 태우는 행위 등 자제하기

## 3.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민감군 질병결석 인정

- 1) 적용대상: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 질환, 심혈관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 학생  
※ 미세먼지와의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 소견서 3월에 학교에 제출한 학생에 한함.
- 2) 질병 결석 인정조건: 등교 시간대(예: 오전 8~9시) 거주지 또는 학교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이며, 학부모가 수업 시작 전(8:50 이전)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문자 등)한 경우

### [미세먼지 예보제]

*예보횟수 : 1일 4회 (오전·오후 5시, 11시)		예 보 등 급(μg/m <sup>3</sup> )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주의보)	경보
예 보 문 본 전 진	미세먼지(PM <sub>10</sub> )	0 ~ 30	31 ~ 80	81 ~ 150	151(150) 이상	300 이상
	초미세먼지(PM <sub>2.5</sub> )	0 ~ 15	16 ~ 35	36 ~ 75	76(75) 이상	150 이상

## <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7대) >

### 1. 외출은 가급적 자제하기

- 야외모임, 캠프, 스포츠 등 실외활동 최소화

### 2. 외출시 보건용 마스크(식약처 인증) 착용하기



※ 어린이와 폐기능 질환자 등은 의사와 충분히 상의 후 마스크 사용

### 3. 외출시 대기오염이 심한 곳은 피하고, 활동량 줄이기

-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도로변, 공사장 등에서 지체시간 줄이기
- 호흡량 증가로 미세먼지 흡입이 우려되는 격렬한 외부활동 줄이기
- ※ 참고 : 한 연구결과(Science Daily, 2016)에 따르면, 대기오염물질 흡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행시 2~6 km/hr, 자전거 운행시 12~20 km/hr(성인기준) 속도 유지

### 4. 외출 후 깨끗이 씻기

- 샤워하고, 특히 필수적으로 손·발·눈·코를 흐르는 물에 씻고 양치질하기

### 5. 물과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야채 섭취하기

-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 항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야채 등 충분히 섭취하기

### 6. 환기, 물청소 등 실내공기질 관리하기

- 실내·외 공기오염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환기 실시
- 실내 물걸레질 등 물청소 실시, 공기정화장치 가동(공기정화장치 필터 주기적 점검·교체)

#### < 환기요령 >

- 실내오염도가 높을 때는 자연환기 또는 기계환기 실시(단, '나쁨' 이상시 자연환기 자제)
- 대기가 정체되어 있는 시간대를 피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 사이에 하루 3번 30분 이상 환기
- 자연환기 시에는 대기오염도가 높은 도로변 외의 다른 창문을 통한 환기 실시
- 조리시 주방후드 가동과 자연환기를 동시에 실시하고, 조리 후에도 30분 이상 환기
- ※ 주택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매뉴얼(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2012), 주거환경 중 주방에서 발생하는 실내 오염물질 관리방안 연구(국립환경과학원, 2013)

### 7. 대기오염 유발행위 자제하기

- 자가용 운전 대신 대중교통 이용, 폐기물 태우는 행위 등 자제하기

# 장애인식 개선

## 1. 통합교육이란 무엇인가?

특수교육대상자(장애학생)를 비 장애학생 집단 속에 포함시켜 서로 돕는 관계를 유지하며 사회의 한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교육을 말합니다.

## 2. 통합교육의 효과

장애 학생에게 주는 효과	비장애 학생에게 주는 효과
<p><b>1.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할 수 있는 기회</b> 장애아동이 또래 집단과 접촉을 실제로 하지 못한다면 바람직한 사회구성원이 되는 기술을 배울 수 없을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분리된 교육을 받은 많은 장애인이 성인이 되어 사회적응을 위한 훈련을 받고 사회재통합을 시도하지만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러나 어려서부터 통합된 환경에서 성장한 아동들은 성인이 되었을 때 쉽게 사회에 적응하면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p> <p><b>2. 인지, 사회성, 언어 등의 발달을 도움</b> 아동기의 놀이는 장애아동의 인지, 사회성, 언어 등의 발달을 돕습니다. 또한 또래와의 놀이는 장애아동이 다양한 경험을 하게하며 또래 아동들과 상호작용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p> <p><b>3. 또래의 행동을 모방하며 성장.</b> 장애아동들은 모방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장애아동이 또래아동의 행동을 모방하고 학습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p>	<p><b>1. 자존감 향상</b> 장애친구를 도우면서 남을 돕는 방법을 배우며 남을 도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겨 자존감이 높아집니다.</p> <p><b>2. 인권 감수성 향상</b> 인간의 다양성과 존엄성을 존중하는 학급 문화가 형성됩니다.</p> <p><b>3. 학습효과 증진</b> 학급에 장애학생이 있으면 선생님의 설명이 더 자세해 지고 주요 내용을 더 많이 반복하여 말하게 됩니다. 또한 학생들도 장애학생에게 학습 내용을 설명해주는 또래교수 과정을 통해 학습내용을 복습하는 효과가 생깁니다.</p>

### 3.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 대한 이해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 ①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0조, 제37조, 제13조, 제14조, 제35조  
예) 체험학습, 짝공 등을 거부하는 것
- ② **장애를 이유로 한 괴롭힘 (학대와 동일한 의미) 등:**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언어적 성희롱, 물리적 성폭력 금지,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집단 따돌림, 모욕적/ 비하적 언어표현이나 행동 금지 등
- ③ **장애인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0조 제2항  
-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는 외모 또는 신체의 공개 불가  
예) 장애인의 이름, 장애특징 등을 알려고 하는 것

하는 경우 3000만원 이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 4. 장애학생에 대한 폭력 금지

장애학생에 대한 학교폭력은 엄정하게 징계하게 되어 있음.

- ※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 징계는 일반학생 대상 학교폭력(성폭력) 사안에 적용하는 처벌보다 **한 단계 이상 높은 수위의 징계를 적용**한다.
- ※ 장애학생 대상 성폭행의 경우, 인지 즉시 경찰 신고 및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해서 가해학생을 격리 조치(출석정지, 전학, 퇴학 등) 한다.